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285 호 2021. 4. 8.(목)

규 칙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75호[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76호[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6
-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77호[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9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63호[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변경)고시] 19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64호[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사항 고시] 20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66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1-68호[신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고시] 22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433호[행정대집행 계고서] 2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451호[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455호[울산광역시 북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3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467호[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4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469호[공시송달 공고] 4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473호[소하천 점용 허가 공고] 4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486호[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4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1-487호[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7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
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이동권 (인)

2021년 4월 8일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575호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를“(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재산분”을 각각 “사업소
분”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주민세 재산분의 보통징수)”를“(주민세 사업소분의 보통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재산분”을 “사업소분”으로, “법 제83조제4항”
을 “법 제83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연도분

접수 일자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기본세율 (가)	연면적에 대한 세율			납부세액 (가+나)	납부일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연면적 (㎡)	세율	세액 (나)			담당자	담 당	부서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7호서식]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

○○○○연도분

과세 번호	사업소명	납 세 의 무 자			사업소 소재지	기본세율 (가)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산출세액 (다=가+나)	가산세 (라)	계 (다+라)	결의일	결 재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소			연면적 (㎡)	세율	세액 (나)					담당자	담 당	부서장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297mm × 210mm(일반용지 80g/㎡)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의 개편 및 납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세세목의 종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 및 별지 서식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
 - '주민세 재산분'의 명칭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개정(제8조, 제9조)
 - 주민세(사업소분) 관련 서식 개정(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동 권 (인)

2021년 4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76호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공
무직 복무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항, 제2조제2항 및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
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6
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
호,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11조제4항제1호, 제12조제1항제1호,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13조
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13조제2항제1호, 제13조제3항제

2호,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17조제1항, 제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제21조제1항, 제21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4항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제3조 중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을 “환경공무직노동조합”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및 같은 별표 표 부분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하고, 같은 별표 재직기간 중의 위반사항란 중 “0.1%”을 각각 “0.08퍼센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직”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2020년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에 따라 환경미화원 명칭을 환경공무직으로 변경하여 자긍심 고취 및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는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현실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공무직 복무 규칙」으로 개정(제명)
- 나. 조문, 별표, 별지 서식의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직'으로 개정(제1조~제17조, 제21조,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 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0.1%를 0.08 퍼센트로 변경(별표 2)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21년 4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77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 ①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이하 “공공산후조리원”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신청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산후조리원을 예약할 때에는 이용기간에 따른 해당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예약금으로 납부하며, 남은 금액은 이용을 시작하는 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일수는 최대 3주(20박21일)로 한다.

제3조(이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이용료는 조례 별표 1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구청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한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이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이미 납부한 예약금 및 이용료를 반환할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반환한다.

제5조(위탁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기간의 연장신청) ① 수탁자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운영기간의 연장을 희망할 때에는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기간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실적을 검토하여 운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협약)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세부시설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기간
2. 위탁대상 및 범위
3. 위탁대상이 되는 시설 및 장비 목록
4. 사무의 처리절차 및 기준
5. 수탁자의 의무
6. 위탁협약 위반 시 조치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계획서)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탁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의 기본방향
2. 수탁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실적
4. 각종 시설 등의 설치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등

제9조(운영비 지원)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2.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3.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0조(정산보고) 수탁자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따른 세입·세출분석 및 운영실적을 매분기 다음 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수탁업무에 대한 총 수입 및 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운영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실 및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의 위탁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탁기간 연장 시 심사자료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해지) 조례 제13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해지사유 등을 해지 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반환(제4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반환금액	
입 소 전	공공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예약금 전액 환급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약금 전액 환급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예약금 전액 환급
		이용예정일 21일~30일 이전	예약금의 60% 환급
		이용예정일 10일~20일 이전	예약금의 30% 환급
	이용예정일 9일 이전	예약금 전액 미환급	
입 소 후	공공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 환급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위탁운영 기간연장신청서			
신청인			연락처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탁기간	. . . 부터 . . . 까지		
<p>「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 (인)</p> <p>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p>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운영 실적 보고서 1부.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이용(제1조, 제2조)
- 나. 이용료의 징수 및 반환(제3조, 제4조, 별표)
- 다. 위탁 신청 및 협약 관련 규정(제5조~제7조)
- 라. 수탁자의 업무 관련 규정(제8조~제11조)
- 마. 운영 관련 지도 감독(제12조)
- 바. 위탁의 해지(제13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변경)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기간연장 허가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1. 4. 1.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창평동 산37-1번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221m²
 - 나. 기 간
- 당초 : 2020. 10. 12. ~ 2021. 3. 31.
- 변경 : 2020. 10. 12. ~ 2021. 6. 30.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국가**공단
 - 나. 주 소 : 부**역시 *구 충*대로**길 46 한진**빌딩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고시내역

허가 년월일	허가 번호	피허가자		점용장소	면적 (㎡)	허가기간	점용목적	비 고
		성 명	주 소					
'21.04.02.	제2021-3호	김말돌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252-3번지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252-3번지	8.99	2021.04.02. ~ 2026.04.01.	활어도소매업 운영을 위한 해수인수 관로 및 집수정 설치	조건부 허 가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무룡로 60-8	연암동 502-1	2021. 4. 8.	건축물 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복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4)에 문의 또는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4. 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신천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완료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1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사업명칭 : 신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3.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동 203-1번지 일원
4.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 272필지, 100,838.2㎡
5. 지적확정조서 : 붙임참조
6. 문의처 : 울산광역시 복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담당(052-241-7282)

붙임 : 지적확정조서 1부. 끝.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국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12.8. 공포, 2021. 6.9.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 개선 보완을 위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으로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
 -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나.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5조, 제13조)
- 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안 제3조)
- 라. 주소정보안내시설 등에 광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마.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6조~제11조)

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사. 손해배상 공제가입 및 토지 등의 출입증(안 제12조, 제15조)

3. 개정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4월 28일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 민원지적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1) 전자우편 : haegomo@korea.kr
- 2) 우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민원지적과
- 3) 팩 스 : 052-241-756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052-24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울산광역시 복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 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 및 제5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징수할 경우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구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감염병 예방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2.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토지 등의 출입증)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 조례 제6조 개정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②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주소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위원의 임기는 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앞 쪽)

제 호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울산광역시 북구청

60mm×90mm [백상지 150g/m²]

(색상: 연하늘색)

(뒤 쪽)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소속/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5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토지·건물등·시설물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복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울산광역시 복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1. 4. 8.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모집인원 : 5명 이내(구성인원(10명) 중 공무원 제외)
2. 모집기간 : 2021. 4. 8. ~ 2021. 4. 19.(11일간)
3. 자격요건 : 행정업무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접수방법 : 모집기간 내 신청서(붙임) 작성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 및 우편 : (44248) 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3층 기획예산담당관(연암동, 울산복구청)
 - 팩 스 : 052-241-7109
 - 이메일 : thoris19@korea.kr
 - 문의처 : 복구청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개발담당(☎ 052-241-7152)
5.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정보제공 동의 포함)
 - 재직 및 경력증명 사본 등 각 1부
(해당자에 한함/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6. 선정결과 : 2021. 4. 30.(금) / 개별통지

※ 발표일시는 위원 모집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활동내용 : 연 1회 이상 회의 참석

-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심의

8. 임 기 : 2년(2회 연임 가능)

- 위촉장 수여 : 회의시 전달

9. 위원 해촉 사유

-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10.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모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기 타

-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관련)
- 구 산하 각종 위원회 중 3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될 수 없음
- 공개모집에 미달되거나 없을시 관련기관·단체·부서 추천으로 모집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241-7152)로 문의

[붙임]

울산광역시 복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위원 신청서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직 장 명 (직 위)			
연 락 처	휴 대 폰 :	자 택 :	
E-mail		성 별	남(), 여()
주 소			
주요경력	• • • •		

위 본인은 「울산광역시 복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위원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2021. 4. .

신청인 : (서명)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직업, 체납여부, 포상실적, 경력사항 등
2.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위원 자격요건 및 기타 제출자료의 진위여부 검증, 위원회 활동 참여
3.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위원 응모 신청일부터 위원 임기 만료일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리
-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위원 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며,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나, 수집 동의 거부시 위원 선정이 불가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성명 :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서 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 정책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1. 4. 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모집인원 : 14명 이내
2. 모집기간 : 2021. 4. 8. ~ 2021. 4. 19.(11일간)
3. 자격요건
 -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 청년정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 기관의 장
4. 접수방법 : 모집기간 내 신청서(붙임) 작성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방문 및 우편 :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3층 기획예산담당관(연암동, 울산북구청)
 - 팩 스 : 052-241-7109
 - 이메일 : kiwee81@korea.kr
 - 문의처 :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 정책개발담당(☎ 052-241-7151)
5. 제출서류
 - 신청서 1부(정보제공 동의 포함)
 - 재직 및 경력증명 사본 등 각 1부
(해당자에 한함/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6. 선정결과 : 2021. 4. 30.(금) / 개별통지

※ 발표일시는 위원 모집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활동내용 : 정기회의 연 1회, 임시회의 수시

-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 심의
-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심의

8.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위촉장 수여 : 회의 시 전달

9. 위원 해촉 사유

-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10.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모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1. 기 타

-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관련)
- 구 산하 각종 위원회 중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될 수 없음
- 공개모집에 미달되거나 없을시 관련기관·단체·부서 추천으로 모집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기획예산담당관(정책개발담당 ☎ 052-241-7151)으로 문의

[붙임]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신청서

성명	(한자)	생년월일	
직장명 (직위)			
연락처	휴대폰		
	직장	자택	
E-mail		성별	남(), 여()
주소			
주요경력	● ● ● ●		

위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이 되고자 신청합니다.

2021. 4. .

신청인 :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직업, 체납여부, 포상실적, 경력사항 등
2.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위원 자격요건 및 기타 제출자료의 진위여부 검증, 위원회 활동 참여
3.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위원 응모 신청일부터 위원 임기 만료일까지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리
-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선발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며,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나, 수집 동의 거부시 위원 선정이 불가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성명 : (서명)

공 시 송 달 공 고

하천구역(천곡천)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경작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고내용: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1. 4. 8. ~ 2021. 4. 22. (14일간)
3. 공고장소: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무단점유 현황

재산의 표시		무단점유현황				비 고
소 재 지	번지	행위자	주소	점유내용	점유면적 (㎡)	
복구 천곡동	1022-1번지	미상	미상	불법경작	100	

5. 공시송달내용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경작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오니, 2021. 4. 19일까지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이행 시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공고 제 2021-473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국가**공단		
	대표자 (성 명)	국가**공단	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총장대로9번길 46 한진해운빌딩
소하천명		화봉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송정동 1104-16번지		
	면적	67㎡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단기: 2021. 4. 6. ~ 2021. 12. 31. 장기: 2022. 1. 1. ~ 영구		
	목적 및 사유	인공구조물 설치 (방재구난지역 설치)		

울산광역시 복구 인권증진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울산광역시 복구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복구 인권증진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1. 4.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모집인원 : 9명 내외
2. 접수기간 : 2021. 4. 8.(목) ~ 4. 19.(월)
3.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4.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5. 제출서류 : 붙임 신청서, 이력서 및 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
6. 접 수 처 : 울산광역시 복구 기획예산담당관 우안녕
☎ 052-241-7102 / e-mail : ginger@korea.kr
7. 선정결과 : 2021. 5. 8.(수) 18:00까지 개별통지
8. 자격요건
 - 가.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 다.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 인권관련 종사자
 - 라. 인권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9.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청 기획예산담당관(우안녕, 241-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울산 북구 인권증진위원회 위원 신청서

성 명*		성 별 (남, 여)	생년월일*	. . .
주 소*				
직 장*	직장명(직업):	직위:		
연 락 처*	☎ 휴대전화:	직장 :		
E-mail	※ 공지사항과 각종 참고자료 발송 시 필요			
주 요 경 력				
비 고				

• 개인정보 이용 기간 : 임기 만료 시까지

*필수항목

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미동의시 신청 불가)

위 본인은 울산광역시 북구 인권증진위원회 위원이 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4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및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납부방법 다양화(안 제5조제1항)

- 수입증지 →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나.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 등 추가(안 제7조제10호부터 제12호)

다. 「위생용품관리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별도 명시된 수수료 항목 삭제(안 별표 1)

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수수료 신설(안 별표 1)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39조(수수료,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규정)
- 다. 「전자정부법」 제14조 (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에 관한 사항 규정)
- 라.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
- 마. 「위생용품관리법」 제30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2 (수수료에 관한 사항 규정)
- 바.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4월 28일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징수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연암동), 징수담당관
 - 전화 : (052)241-7526, 팩스 : (052)241-7519
 - 전자메일(E-mail) : sungyup73@korea.kr

6. 기타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s://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징수방법)”을 “(수수료의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①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복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별표 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 제4호 보건사회관계 중 (1) 위생용품제조업 등 허가, 신고 등 수수료란을 삭제하고, 제5호 문화공보관계 중 (17)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신고, (18)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 (19)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교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신고	1건	20,000원	
(18)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	”	10,000원	
(19)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교부	”	5,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u></p> <p><u>② 증지요금계기에서 발급한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u></p> <p><u>③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한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u></p> <p>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 9. (생략)</p>	<p><u>제5조(수수료의 납부) ①수수료는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u></p> <p><u><삭 제></u></p> <p><u><삭 제></u></p> <p>제7조(수수료의 감면) ① ----- ----- ----- -----.</p> <p>1. ~ 9.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 data-bbox="167 383 322 421"><신설></p> <p data-bbox="167 680 322 719"><신설></p> <p data-bbox="167 956 322 994"><신설></p> <p data-bbox="209 1576 411 1615">② (생략)</p>	<p data-bbox="799 383 1430 651">10. 「<u>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 제6조에 따른 <u>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u></p> <p data-bbox="799 680 1430 927">11. 「<u>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u>」 제4조에 따른 <u>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u></p> <p data-bbox="799 956 1430 1532">12.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u>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u></p> <p data-bbox="836 1576 1134 1615">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별표 1]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분	기준	수수료	비고	구분	기준	수수료	비고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입찰참가신청 등)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보건사회관계				4. 보건사회관계			
(1) 위생용품제조업 등 허가, 신고 등 수수료	1건			<삭 제>			
가. 위생처리업	“	3,500원/ 2,300원		<삭 제>			
나. 세척제 제조업	“	15,000원/ 8,000원		<삭 제>			
다.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	3,500원/ 2,300원		<삭 제>			
라. 영업양수신고 수수료는 신규영업허가(신고) 수수료에 준한다	“			<삭 제>			
마. 이·미용사 면허	“	2,300원/ 2,000원		<삭 제>			
바. 각종 허가신고증 재교부	“	500원		<삭 제>			
(2)~(7) (생략)				(2)~(7) (현행과 같음)			
5. 문화공보관계				5. 문화공보관계			
(1)~(16) (생략)				(1)~(16) (현행과 같음)			
<신 설>				(17)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신고	1건	20,000원	
<신 설>				(18)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	“	10,000원	
<신 설>				(19)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교부	“	5,000원	
6. ~ 12. (생략)				6. ~ 12.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 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예우 및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2>

1. "특수임무"라 함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라 함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제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②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적용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1. "특수임무"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유공자"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08. 3. 28.]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

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④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전문개정 2008. 3. 28.]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등록 및 결정) ①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29호, 2011. 8. 4., 타법개정]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 한다)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公傷基準)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을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판정된 신체의 장애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제5조·제7조·제10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1항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부 칙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제12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위생용품 관리법」

제3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자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
3. 제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는 자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수수료 납부) 법 제3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신고·검사 등을 받는 해당 기관에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수수료(제27조 관련)

1. 영업의 신고·변경신고 등

가. 영업신고: 28,000원

나. 변경신고

- 1) 영업소 소재지 변경: 20,000원
- 2) 영업소 소재지 외 변경: 9,000원(영업자 성명 변경은 수수료를 면제한다)
- 3) 영업소 소재지 및 소재지 외 사항을 함께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9,000원

- 1)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와 함께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만 적용한다.

라. 영업의 신고·변경신고 등 수수료의 면제

- 1) 위생용품제조업자가 자사제품의 원료로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변경신고 등을 하려는 경우
-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위생용품 수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2. 수입 위생용품의 검사

가. 검사수수료: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시험·검사수수료에 따른다. 다만, 수입신고인이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검사기관이 정한 검사수수료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정한 수수료를 따른다.

나. 검사수수료의 면제

- 1) 별표 3에 따른 현장검사 결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용품
- 2) 별표 3 제1호라목에 따라 무작위표본검사대상에 해당하는 위생용품(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3) 국내외 위생용품 관련 안전정보 등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용품

□ 「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2(수수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 3. 31.]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수수료) 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4. 22.>

1.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 5천500원
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3천원

[본조신설 2005. 11. 1.]

□ 「식품위생법」

제9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0. 3. 26., 2011. 6. 7., 2013. 3. 23., 2013. 7. 30., 2014. 5. 28., 2016. 2. 3., 2016. 12. 2.>

1. 제7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
- 1의2.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요청하는 자
- 1의3. 삭제 <2018. 3. 13.>
2.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를 받는 자
3. 삭제 <2015. 2. 3.>
- 3의2. 삭제 <2015. 2. 3.>
- 3의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재검사를 요청하는 자
4. 삭제 <2013. 7. 30.>
5. 제37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는 자
6. 제48조제3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식품안전관

- 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신청하는 자
- 6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하는 자
- 7. 제49조제1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한 등록을 신청하는 자
- 8. 제53조에 따른 조리사 면허를 받는 자
- 9.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자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수수료) ① 법 제9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6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허가관청, 면허관청 또는 신고·등록·신청 등을 받는 관청이나 기관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5. 8. 18.>

② 제1항에 따른 납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수수료(제97조 관련)

1. 영업허가, 신고 및 등록 등

가. 신규: 28,000원

나. 변경: 9,300원(소재지 변경은 26,500원으로 하되, 영 제26조제1호, 제41조제3항제1호, 제43조의3제2항제1호 및 제94조제7항의 변경사항인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 조건부영업허가: 28,000원

라.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 28,000원(제9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마. 허가증(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발급: 5,300원

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9,300원.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와 폐업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2. 지정 등 신청

가.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 신청

1)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 심사: 5,000,000원

2) 후대교배종의 안전성 심사 대상 여부 검토: 2,900,000원

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

1) 신청: 200,000원(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포함한다)

2) 변경(소재지, 중요관리점): 100,000원

다.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

1) 식품원료: 100,000원

2) 식품첨가물(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를 포함한다), 기구 및 용기·포장: 30,000원

3. 조리사면허

가. 신규: 5,500원

나. 면허증 재발급: 3,000원

다. 조리사면허증기재사항변경신청: 890원(개명으로 조리사의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4. 삭제 <2016.2.4.>

5. 삭제 <2016.2.4.>

6. 표시·광고 심의 신청: 100,000원

7.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 등

가.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 검토 수수료(각 품목별로 수수료를 부과한다)

- 1) 신규 설정: 30,000,000원
- 2) 변경 및 설정면제: 10,000,000원

나.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 검토 수수료

- 1) 농약(식품별로 부과한다): 5,000,000원
- 2) 동물용 의약품(동물별로 부과한다): 10,000,000원

8. 재검사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등) ①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이 자체교육 또는 연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방송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이 그 사업의 홍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경우
5. 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를 기념으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다만, 공중에게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정보통신망만을 이용하여 시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배급하는 경우
7.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유통하거나 시청에 제공할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제작하는 경우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애니메이션업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애니메이션업자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한 애니메이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4항에 따른 신고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2. 상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3. 영업소의 소재지
4. 애니메이션업의 종류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증을 받은 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에 신고증을 첨부(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애니메이션업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번호	제 호	신고연월일	

상호(법인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연월일	
변경사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애니메이션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1.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조례로 정한 금액 ()원
-------	--	---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 담당 부서